

[붙임1] 일부개정령안

대통령령 제 호
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9호 중 “신·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,”을 “신·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및”으로, “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「에너지법」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”을 “집단에너지공급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2호 중 “제10호까지”를 “제9호까지, 제9호의2, 제9호의3, 제10호”로 한다.

9의2. 「에너지법」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

9의3.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소
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

제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한국석유공사·대한석탄공사·한국광해광업공단”을 “한국석유공사·한국석유관리원·대한석탄공사·한국광해광업공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한국에너지공단”을 “한국석유관리원·한국에너지공단”으로 한다.

1의2. 한국석유관리원: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·충당에 관한 사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환급사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「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」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「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한 경우 이 영 제8조제1항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[붙임2] 신·구조문대비표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사업의 범위 등)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8. (생략) 9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<u>신·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</u> ,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 따른 <u>집단에너지공급사업</u> 및 「에너지법」에 따른 <u>에너지기술개발사업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3조(사업의 범위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----- ----- ----- -- <u>신·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</u> 및 ----- ----- <u>집단에너지공급사업</u> 9의2. 「에너지법」에 따른 <u>에너지기술개발사업</u> 9의3.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 10. ~ 11. (현행과 같음) 12. ----- <u>제9호까지, 제9호의2, 제9호의3, 제10호</u> -----

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

②·③ (생략)

제8조(회계사무의 위탁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~ 4. (생략)

②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·대한석탄공사·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·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 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, 연간 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한국석유공사·대한석탄공사

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회계사무의 위탁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한국석유관리원: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·충당에 관한 사무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 한국석유공사·한국석유관리원·대한석탄공사·한국광해광업공단 -----

-----.

③-----

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<u>한국에너지공단</u>의 이사장은 위 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 을 정할 수 있다.	----- <u>한국석유관리원 · 한국에너지공</u> <u>단</u>----- ----- ----- -----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128